

	규정심의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10
		제정일자	2006.10.18.
		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 및 연구
3. 기타 규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교직원과 전략기획처장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규정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서기)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8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전략기획처에서 담당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10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